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3536 호
- 다. 제출일자 : 2026. 2. 9.
- 라. 회부일자 : 2026. 2. 12.

2. 제안이유

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징수대상시설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위 치	중랑구 면목동~ 구리시 아천동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면동
규 모	연장 3.5km, 왕복 4차로	연장 12.4km, 왕복 6~8차로
영업소	1개소	2개소(금천, 선암)
개통일시	2014.11.21.	2016.7.3.

구 분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위 치	강서구 신월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등포구 양평동~ 금천구 독산동
규 모	연장 7.53km 왕복4차로	연장 10.33km 왕복4차로
영업소	1개소	1개소
개통일시	2021.4.16.	2021.9.1.

나. 통행료 조정 신고 현황

(단위: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중형	대형
용마터널	현 재 (24.7.1)	1,700	2,900	3,800
	신 고 (26.4.1)	1,800	3,000	3,900
	증·감	+100	+100	+100
강남순환로	현 재 (24.7.1)	1,900	3,200	
	신 고 (26.4.1)	2,000	3,400	
	증·감	+100	+200	
신월여의 지하도로	현 재 (24.7.1)	2,700		
	신 고 (26.4.1)	2,800		
	증·감	+100		
서부간선 지하도로	현 재 (24.7.1)	2,800		
	신 고 (26.4.1)	2,900		
	증·감	+100		

다. 통행료 조정 : 통행료 동결

-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 시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6년 통행료 동결 필요

라. 통행료의 산출기초

- 협약상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전년도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붙임-2 참조)

마.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 붙임-4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나. 예산조치 : 2026년 통행료 동결에 따른 수익감소분 보전액 재정지원 필요(약 95.7억원)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의견청취안은 민자도로인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 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실시협약에 근거한 통행료 인상('26.4.1일자)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시민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통행료를 동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1)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금회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조정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용마터널' 전 차종 각 100원 인상, '강남순환로' 소형 100원, 중형 200원 인상, '신월여의지하도로' 소형 100원 인상, '서부간선지하도로' 소형 100원 인상으로 협약상 기준통행료에 2025년 말 소비자물가지수(누적 변동률)를 반영한 결과임([표] 참조).

[표] 금회 통행료 조정 신고 현황

(단위 : 원/대, VAT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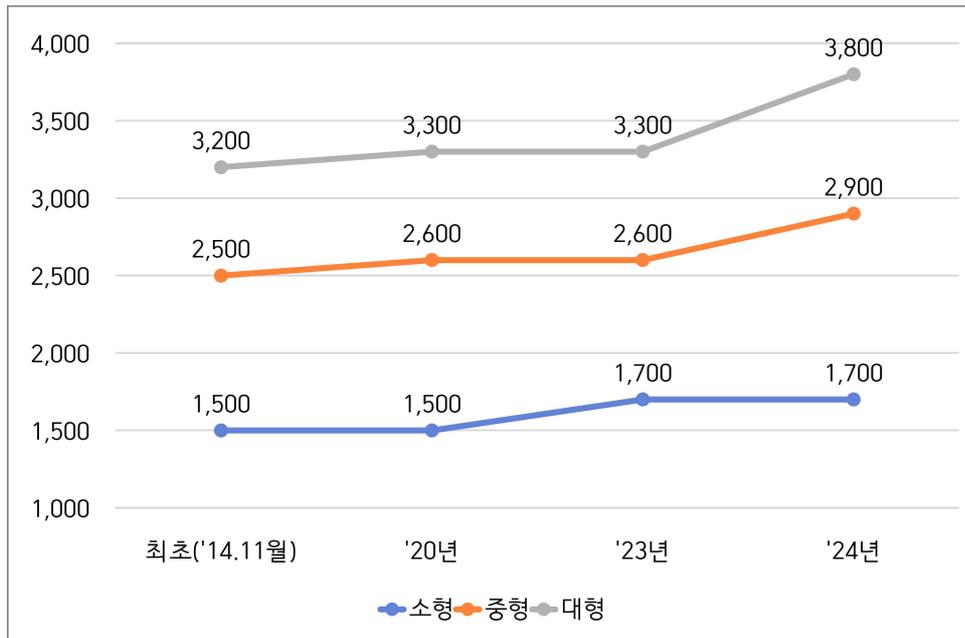
구 분		소형	중형	대형
용마터널	현 재('24.7.1)	1,700	2,900	3,800
	신 고('26.4.1)	1,800	3,000	3,900
	증·감	+100	+100	+100
강남순환로	현 재('24.7.1)	1,900	3,200	
	신 고('26.4.1)	2,000	3,400	
	증·감	+100	+200	

- 1) 제13조(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월여의 지하도로	현 재('24.7.1)	2,700		
	신 고('26.4.1)	2,800		
	증·감	+100		
서부간선 지하도로	현 재('24.7.1)	2,800		
	신 고('26.4.1)	2,900		
	증·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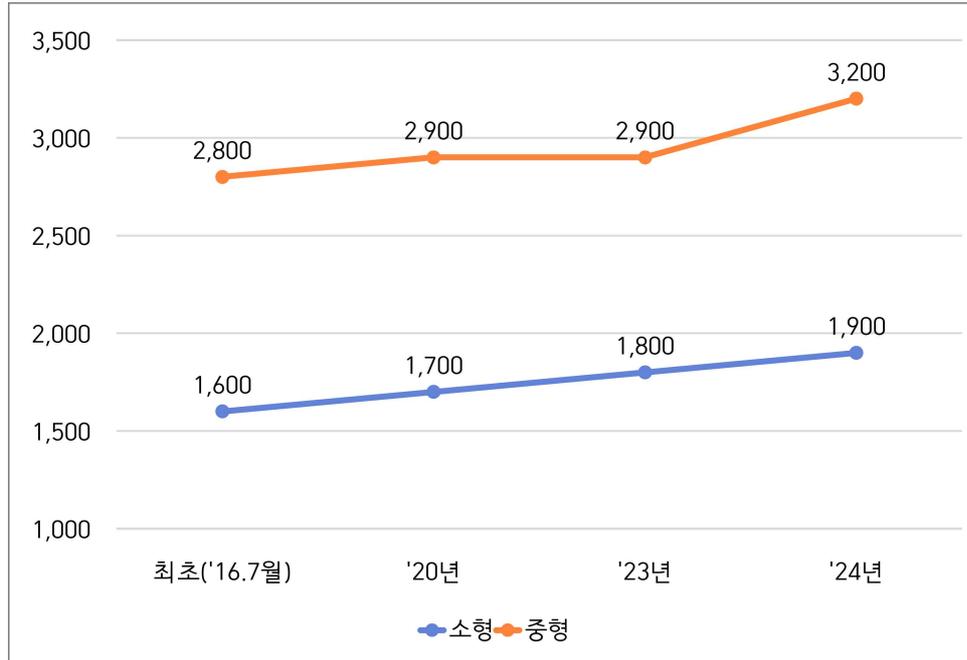
■ 금회 대상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 이력

- ‘용마터널’의 경우 ‘14.11월 개통 당시 최초 통행료가 소형차량 1,500원, 중형차량 2,500원, 대형차량 3,200원으로 결정된 후 소형차량 1회(‘23.7.1일자 200원 증), 중형차량 2회(‘20.4.1일자 100원 증, ‘24.7.1일자 300원 증), 대형차량 2회(‘20.4.1일자 100원 증, ‘24.7.1일자 500원 증) 인상하여 현재 요금은 각각 1,700원(소형), 2,900원(중형), 3,800원(대형)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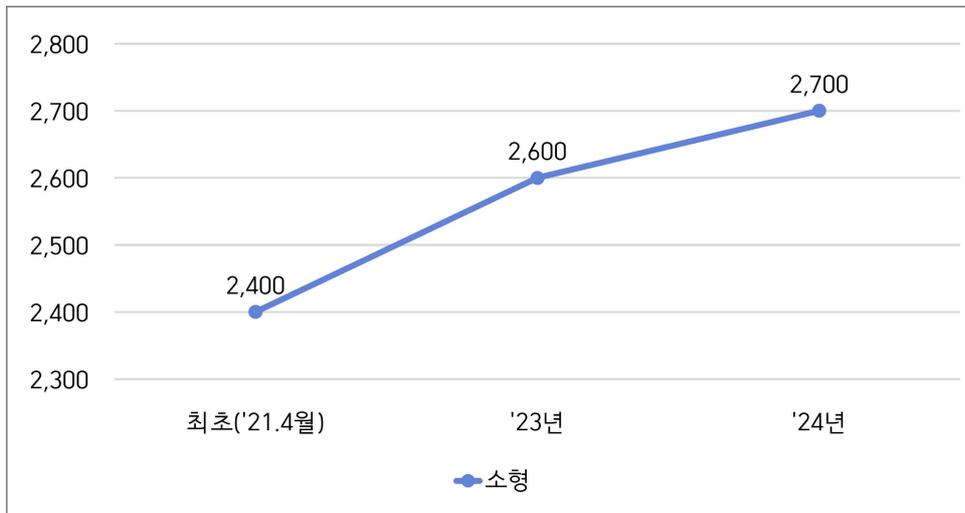
[그림] 용마터널 요금 변동 이력

- ‘강남순환로’의 경우는 ‘16.7월 개통 당시 최초 통행료가 소형차량 1,600원, 중형차량 2,800원으로 결정된 후 소형차량 3회(‘20.4.1일자 100원 증, ‘23.7.1일자 100원 증, ‘24.7.1일자 100원 증), 중형차량 2회(‘20.4.1일자 100원 증, ‘24.7.1일자 300원 증) 인상하여 현재 요금은 각각 1,900원(소형), 3,200원(중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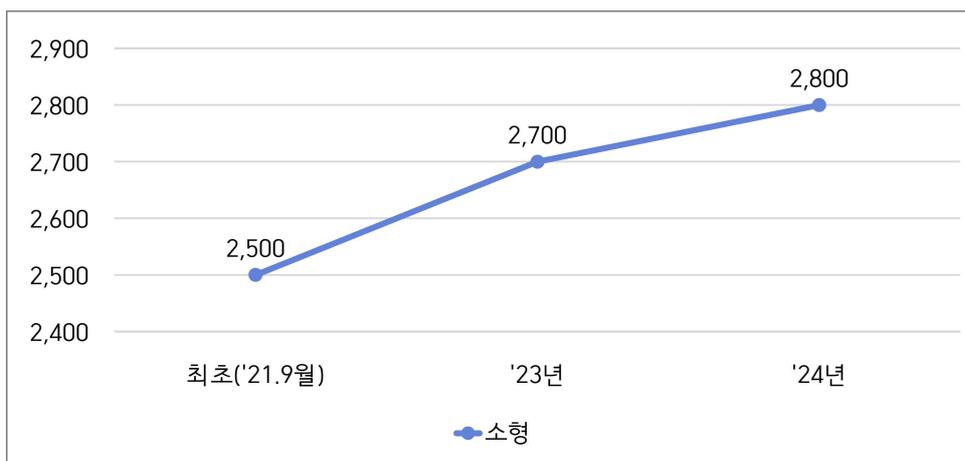
[그림] 강남순환로 요금 변동 이력

- 다음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소형차량 전용도로로서 ‘21.4월 개통 당시 최초 통행료가 2,400원으로 결정된 후 2회(‘23.7.1일자 200원 증, ‘24.7.1일자 100원 증) 인상하여 현재 요금은 2,700원임.



[그림]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 변동 이력

- 마지막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량 전용도로로서 '21.9월 개통 당시 최초 통행료가 2,500원으로 결정된 후 2회 ('23.7.1일자 200원 증, '24.7.1일자 100원 증) 인상하여 현재 요금은 2,800원임.



[그림] 서부간선지하도로 요금 변동 이력

■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조정 신고

-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조정 신고는 각각의 실시협약조건²⁾에 따른 것으로, 기존 통행료가 결정된 실시협약 시점부터 2025.12월말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존 통행료에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1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 한 후 100원 단위 통행료로 산정한 것임(〔표〕 참조).

[표] 2026년 통행료 산정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소형	소형	
기준 통행료 (A)	1,000. ⁰⁰	1,700. ⁰⁰	2,200. ⁰⁰	1,067. ⁴⁸	1,814. ⁷²	1,862. ⁰⁰	1,836. ⁰⁰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B)	178. ⁸⁴ %			184. ⁷⁰ %		149. ²⁰ %	152. ⁶⁵ %	
'25년	산정통행료(C)	1,788. ⁴¹	3,040. ³⁰	3,934. ⁵⁰	1,971. ⁵⁹	3,351. ⁷¹	2,778. ¹²	2,803. ²⁶
	적용통행료(D)	1,800	3,000	3,900	2,000	3,400	2,800	2,800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 통행료 산정 : (A) × (B) = (C),

(C) → (D)

- 통행료 조정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3조제3항³⁾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2) ‘용마터널’ 제31조, ‘강남순환로’ 제32조, ‘신월여의지하도로’ 제47조, ‘서부간선지하도로’ 제47조

3) 제23조(사용료)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율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근거하여 용마터널 실시협약 제31조, 강남순환로 실시협약 제32조, 신월여의지하도로(舊 서울제물포터널) 실시협약 제47조, 서부간선지하도로 실시협약 제47조에서는 공통적으로 통행료에 대해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조정기준일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통행료 조정안을 결정하게 됨.
- 금회 통행료 인상 조정 역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신고함에 따른 것임.

[표] 실시협약 상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관련 조항

용마터널 실시협약('18.6.8.)	강남순환로 실시협약('20.07.08.)
제 31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제 32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통행료를 서울특별시에 신고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본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통행료를 서울특별시에 신고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본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	

<p>고한 통행료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통행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결정한다.</p> <p>④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변경으로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조정된 통행료는 추정통행료 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p>	<p>제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p> <p>③ 서울특별시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통행료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통행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결정한다.</p> <p>④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변경으로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조정된 통행료는 추정통행료 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월여의지하도로(舊 서울제물포터널) 실시협약('14.5.9.)</p> <p>제 47 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p> <p>① ~ ② (생략)</p> <p>③ <u>최초통행료를 제외한 연도별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u>, 사업시행자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조정기준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한다.</p> <p>④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통행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통행료의 적절한 조정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통행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p> <p>⑤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결정하고, 이로 인한 추가 또는 감소한 통행료는 차기년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부간선지하도로('24.3.27.)</p> <p>제 47 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p> <p>① ~ ② (생략)</p> <p>③ <u>최초통행료를 제외한 연도별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u>,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직전 연도 통행료에 직전 연도 통행료 산정 기준일로부터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한다.</p> <p>④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통행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통행료의 적절한 조정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통행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p> <p>⑤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결정하고, 이로 인한 추가 또는 감소한 통행료는 차기년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p>

■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안에 대한 의견

- 서울시는 금회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조정 신고에 대해 최근 정부의 공공요금 국민 부담 완화 기조에 따라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금년 인상분만큼을 통행료 징수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기획재정부, '25.12.31.)

IV. 세부 추진과제

1. 동절기 물가안정

◇ 공공요금, 먹거리, 에너지, 교통비, 식비 등 동절기 핵심생계비 물가 안정 노력을 통한 민생부담 경감

□ **(공공요금)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 국민 부담 완화

□ **(먹거리) 연말까지 진행 중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 이어, **설 명절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수급동향 점검**

* 12.31일까지 배추, 돼지고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5종 최대 50% 할인

○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필요시 별도의 수급 안정방안 마련

* 방역수칙 위반 농가 처벌(과태료 상향), 생분쇄음 감역 등, 위험지역 특별점검(2.26~), 전국 산문폐 일제감사(2.18~31일 등

-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수익감소분을 서울시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해 줌으로써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보전액은 약 95억 7천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표] '26년 미인상에 따른 민자도로별 재정지원금 내역(추정)

구분		'26년 예상교통량 (천대)	'26년 미인상분 (원)	'26년 손실액 (백만원)
용마터널	소계	12,128		1,070
	경차	822	50	40
	소형	10,882	100	990
	중형	294	100	30
	대형	130	100	10

강남순환	소계	53,941		4,890
	경차	3,046	50	140
	소형	49,573	100	4,510
	중형	1,322	200	240
신월여의	소계	22,348		1,970
	경차	1,351	50	60
	소형	20,997	100	1,910
서부간선	소계	18,510		1,640
	경차	1,075	50	50
	소형	17,435	100	1,590
총합계				9,570

1) 손실액은 부가가치세(VAT) 제외 금액임

2) 경차는 50% 감면 대상임.

- 이처럼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통행료의 직접적인 인상 조치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수익감소분을 재정으로 간접 보전해 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이 시민 체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 특히, 민자도로는 출퇴근 등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아 통행료 인상 시 가계 교통비 증가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시민 부담 완화 및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동결에 따른 수익감소분 약 95억 7천만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향후 반복적 동결에 따른 재정부담 누적 가능성,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상 재정지원 구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붙임] 통행료 산정 관련 자료(서울시)

통행료 산정 관련 자료

1. 통행료 조정 근거 및 조정방법

○ 관계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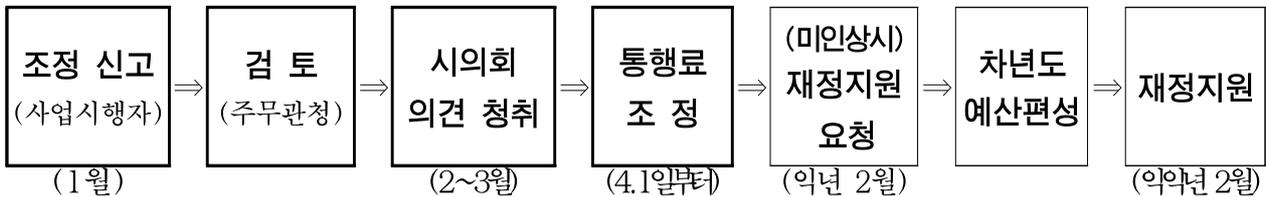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조

○ 조정방법

- 협약상 기준통행료에 전년도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통행료 조정(사사오입)

$$'26년 통행료 = 기준통행료(실시협약) \times \frac{\text{물가지수('25년도 말 기준)}}{\text{물가지수(불변일 기준)}}$$

○ 조정절차



2. 2026년 통행료 산출내역

【용마터널】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1.4월부터 '25.12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178.84%, 전차종 통행료 인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중형	대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a)		1,000. ⁰⁰	1,700. ⁰⁰	2,200. ⁰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d=c/b)		178. ⁸⁴ %		
'01.04월 소비자물가지수(b)		65. ⁷⁴		
'25.12월 소비자물가지수(c)		117. ⁵⁷		
2026년	산정통행료(a×d)	1,788. ⁴¹	3,040. ³⁰	3,934. ⁵⁰
	적용통행료	1,800	3,000	3,900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5.12.

【강남순환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0.11월부터 '25.12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184.70%, 전차종 통행료 인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중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a)		1,067. ⁴⁸	1,814. ⁷²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d=c/b)		184. ⁷⁰ %	
'00.11월 소비자물가지수(b)		63. ⁶⁶	
'25.12월 소비자물가지수(c)		117. ⁵⁷	
2026년	산정통행료(a×d)	1,971. ⁵⁹	3,351. ⁷¹
	적용통행료	2,000	3,400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5.12.

【신월여의지하도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7.2월부터 '25.12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52.65%로 인상 대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a)		1,836. ⁰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d=c/b)		152. ⁶⁵ %
'07.02월 소비자물가지수(b)		77. ⁰²
'25.12월 소비자물가지수(c)		117. ⁵⁷
2026년	산정통행료(a×d)	2,803. ²⁶
	적용통행료	2,800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5.12.

【서부간선지하도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7.7월부터 '25.12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50.47%로 인상 대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a)		1,920. ³¹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d=c/b)		150. ⁴⁷ %
'07.07월 소비자물가지수(b)		78. ¹³
'25.12월 소비자물가지수(c)		117. ⁵⁷
2026년	산정통행료(a×d)	2,889. ⁵³
	적용통행료	2,900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5.12.

3. 차종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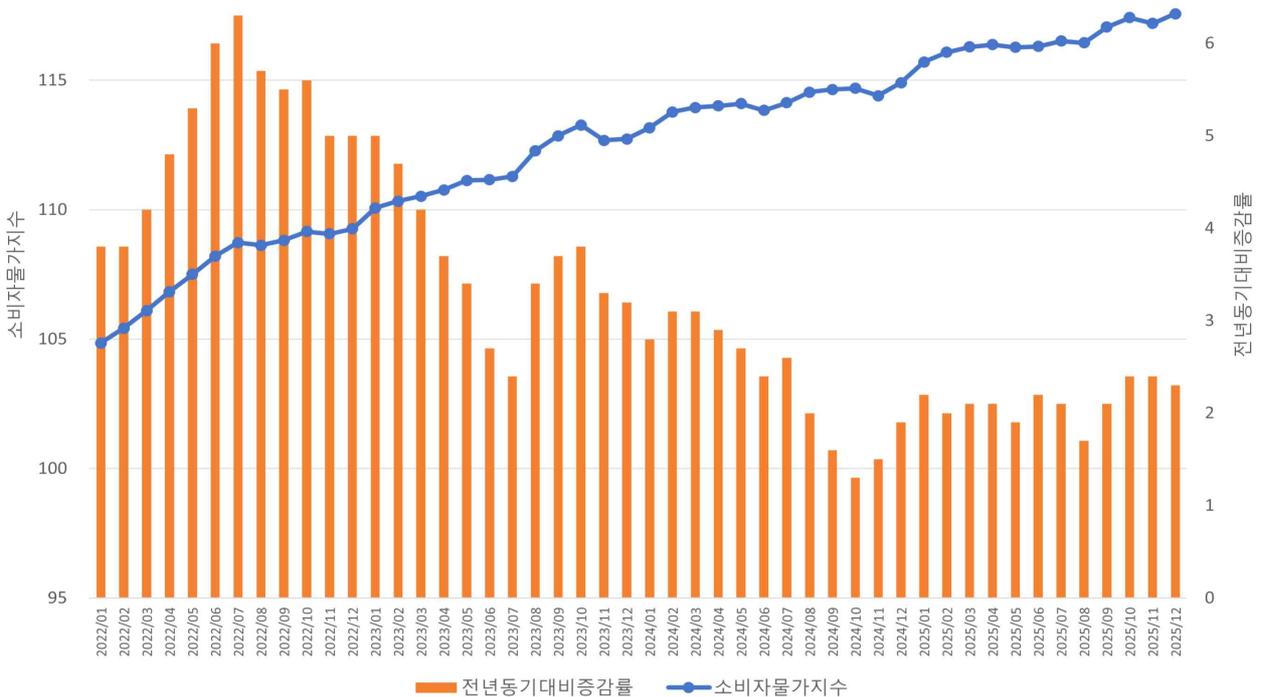
구 분	대 상 차 량 제 원
소형	승용차, 15인승 이하 소형버스, 2.5톤 미만 소형화물
중형	16인승 이상 대형버스, 2축 이하, 2.5톤 이상~10톤 이하 화물차
대형	3축 이상, 10톤 초과 화물차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4.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관리청	시 설 명	연 장(km)	통행요금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2.96	소형·중형 : 2,500원
경기도	일산대교	1.84	소형 : 600원, 중형 : 900원 대형 :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14.3	소형 : 2,600원, 중형 : 4,400원 대형 : 5,700원
남양주시	수석~호평	11.2	소형 : 1,700원, 중형 : 3,400원 대형 : 4,200원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4.9	소형 : 2,600원, 중형 : 3,900원 대형 : 5,300원
화성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8.0	소형 : 1,000원, 중형 : 1,100원 대형 : 1,400원
강원도	미시령터널	3.69	소형 : 3,400원, 중형 : 5,800원 대형 : 7,500원
대구광역시	대구남부순환도로 (앞산터널로)	10.44	소형 : 1,700원, 대형 : 2,400원
부산시	부산항대교	3.37	소형 : 1,400원, 중형 : 2,400원 대형 : 3,000원
경상남도	마창대교	1.70	소형 : 2,500원, 중형 : 3,100원 대형 : 3,800원
	창원~부산	22.48	소형 : 2,200원, 중형 : 3,400원 대형 : 4,400원

* 통행료는 2026.01.01. 기준임

5.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5.12.